

박형준 / 5월 / 기출GS / 2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5	12.5	18.5	12.5	62	1	2.50%	4	40
562576	18.5	12	17.5	11.5	59.5	2	5.00%	5	
563195	16	11.5	13	10	50.5	3	7.50%	4	
562188	14.5	12	13	10	49.5	4	10.00%	4	
562350	14.5	11	13.5	10	49	5	12.50%	5	
562434	16	11.5	13.5	6.5	47.5	6	15.00%	6	
563199	15.5	10.5	13.5	8	47.5	6	15.00%	5	
563443	14	11.5	12.5	9	47	8	20.00%	5	
563528	15	11.5	12.5	7.5	46.5	9	22.50%	3	
563311	15.5	8.5	12	9.5	45.5	10	25.00%	5	
563423	14	11.5	11.5	8	45	11	27.50%	5	
562578	14.5	11.5	10.5	8.5	45	11	27.50%	4	
562320	15	9.5	10.5	9	44	13	32.50%	5	
562403	13.5	9.5	12	9	44	13	32.50%	4	
562508	11.5	12	14.5	5.5	43.5	15	37.50%	5	
562305	14	9	13	7	43	16	40.00%	5	
563029	15.5	9.5	11	7	43	16	40.00%	4	
562813	14	8	11	9	42	18	45.00%	3	
563441	11	10.5	10.5	10	42	18	45.00%	5	
562397	10	10	12	9.5	41.5	20	50.00%	4	
563344	11.5	10	11	8	40.5	21	52.50%	5	
562189	12	10.5	11	6	39.5	22	55.00%	4	
563002	10.5	9	13	7	39.5	22	55.00%	5	
562227	11.5	8	10.5	9.5	39.5	22	55.00%	5	
563474	15.5	11.5	11.5	0	38.5	25	62.50%	5	
562176	15	9	11.5	2.5	38	26	65.00%	4	
562339	11.5	10	12.5	4	38	26	65.00%	4	
562924	13.5	12	9.5	3	38	26	65.00%	4	
563033	14	10	10.5	2	36.5	29	72.50%	3	
562207	12	9.5	7	8	36.5	29	72.50%	4	
562268	10.5	8.5	9	7.5	35.5	31	77.50%	4	
563288	9	10	11.5	5	35.5	31	77.50%	5	
562354	10.5	11	8.5	5	35	33	82.50%	5	
562358	10	9.5	6.5	7.5	33.5	34	85.00%	5	
562342	9	9	6.5	8	32.5	35	87.50%	3	
562408	7.5	5.5	12	4	29	36	90.00%	5	
562326	11	6	8	3.5	28.5	37	92.50%	4	
562783	11	7	5.5	5	28.5	37	92.50%	4	
562372	8.5	11.5	0	6.5	26.5	39	97.50%	5	
562175	16	0	0	0	16	40	100.00%	5	

박형준/5월/기출GS/2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문제 1번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논점들이 모두 섞여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설문 4번에 당황스러운 조치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물어보는 것에 맞추어 취지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차이점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배점이 2점으로 낮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작성해주시는 것은 지양해주셔야 합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주어진 4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판례 및 사안포섭을 적절히 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리소진이나, 선사용권 등의 대인적 사유는 권리범위 확인과 무관하고, 전합 판례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번과 2번에서의 상황은 을이 갑에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며 심리범위가 아닌 부분만을 주장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만약 갑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을이 심리범위가 아닌 부분을 주장할 경우 해당 주장만이 배척될 뿐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물건발명, 즉 PbP 청구항이 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제법발명으로 이해한 답안도 꽤 있었는데, 문제에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므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대부분의 답안에서 가독성이 좋지 않았고, 다각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익숙한 정형화된 조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의 조치에 대해 무효심판 하나에 대한 다툼 또는 정정청구 등을 검토해주신 답안이 많았으나, 현재 문제에선, 병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관계, 또한 갑이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관계도 존재하므로, 해당 상황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장에서 모든 논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린다면 절대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막하시더라도, 우선 강사님 답안을 숙지하시며, 비슷한 유형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저도 해당 회차 기출문제에 좌절할 기억이 있는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선 기출문제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조치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으나, 기출문제를 통해 생소한 유형을 커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면, 남들보다 비교적 덜 당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2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공지에외주장 관련 논점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설문들 역시 판례들이 존재하므로, 판례들 충실히 작성해주시고, 답 잘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보정기간 내에 공지에외주장이라는 보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출원을 통한 공지에외주장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부 답안에서 답을 틀리거나,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에외주장 가부 판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개념 확실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제한설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제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선행발명 변경 시 주지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합니다. 해당 논리를 오개념 없이 기억해놓으시고, 답안을 해당 흐름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로서, 출원인 변경신고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 역시 판례사안이 존재하므로, 판례에 맞춰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답 잘 맞춰주셨습니다.</p>	

3. 소결

1번에 많은 시간을 쏟은 분들이 많으셨는지 비교적 2번이 간단했음에도, 실수하거나, 조금 빈약하게 작성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시간관리는 답안의 맞고 틀림 및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 문제에 지나치게 오버페이스 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2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대폭 차용한 문제로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복잡하긴 하나,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숙지하신 분들께서는 답안 작성이 비교적 편안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을과 병의 침해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각각 따로 침해 여부를 검토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을과 병을 구분하지 않고 검토해주신 답안도 많았는데, 병과 을의 행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직접과 간침으로 달라지므로, 문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답안에서 간접침해 판단 시 공용성 및 전용성 관련 판례 충실히 작성해주셨고, 그에 대한 사안포섭도 통통하게 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 역시 정과 무의 행위를 각각 침해 여부를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행위들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보니, 복수주체 침해이론을 작성해주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문제에서 해당 논점을 주논점으로 작성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부논점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법에서 수출이 간침에서 전용품의 실시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이후 판례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중요도가 높아진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도 굉장히 헷갈리는 설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공급한 경우의 판례가 떠오르기는 하나, 실제 판례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자였으나, 문제된 사안에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의 제조 판매이므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이점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어디 인가를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판례 공부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결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개정법에 실시행위에 수출이 포함되었으므로, 직침 및 간침의 중요도가 원래도 높았으나,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논점들과 판례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2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여러 논점들이 설문 3개에 다양하게 녹아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모두 빈출되는 논점들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논점 자체는 생소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선택발명의 의의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바에 따라 대목차로 뜯어, 각각 판례 등으로 충실히 답안 작성해주신 분들이 가독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판례 작성시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과 같이 키워드 빼먹지 않고 잘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상위개념이 선등록되었을 때 하위개념 실시, 하위개념이 선등록되었을 때 상위개념 실시, 동일자 출원일 때 침해 여부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보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틀리신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특허요건 판단 시와, 권리범위 판단 시의 상위개념 하위개념의 관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오개념 확실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에서는 병은 갑의 침해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과제 해결원리가 언급된 점에 기초하여, 균등론에 대한 조치가 주 논점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설문에서는 균등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조치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소결

변리사 시험은 단순히 암기한 것을 바르는 것이 아닌, 설문의 배점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강약조절로 논점들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차생 분들이라면 기출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분명 해당 기출 답안을 작성해보신 경험이 7월의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18.5

문제 1

I 실문 1)

9.5

1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제도의 취지 체계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간판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판권은 대상으로 권리 범위 선택 확인 하는 제도이다

2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침해 소송 하이질~~

① 권리 관계의 최종 확인을 구하는 하이질 있고 ② 경쟁권나
등 무리 차이점 및 ③ 판단 주체에 있어 하이질 있다.

II 실문 (2) -1)

7.5

1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대물적 범위" 심리가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목적 및 한계로 인해 권리 범위
중 권리 소인과 같은 대물적 범위는 일4부개의 등
호라는 고지 하에 권리 관련 논란 사고 하있다.

2 소질 - 권리소인 아직 없음 무부강

권리 소인 외 사항은 권리 범위 확인과 무관하게 호격이
제항 리는 사질 별이어서 무디 구강은 구강 라체로
아직 없다. 무구강 부강하가

III 실문 (2) -2)



1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권보성" 권리 가부 - 관할 관할사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목적은 본질에 따라 권보성이 있는 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2 차례로 특허가 유권하고 있다고 따라서. 유권심판 가능과 권한 준비를 고려 해서 공권 관할에 변경하여 권리 범위로 부터 배제 가능

2 권리 - 선점과 비교

선점성과 권보성 과 차이가 없을 때는 권보성도 권리 이 권리 가능 하다는 관행도 있다.

3 소결 - 권보성 없음 아직 없음. 청구항 불합

권보성 권리 관할 불합으로 청구항 불합 하라

IV 실문(2)-3)

1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공중 범위" 권리 가부 관할사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권리 범위가 확정된 관할사 관할 심판 이므로 구성이 공중 범위 범위 내의 공중 범위 이 까지 권리 관할 가능 하다고 한다.

2 비판

심판 권리 관할에 따라 과도한 권리 범위로 부여하여 3차 불의 라 생활 영리가 어려운 관행이 있다

3 소결 - 甲주강 타당 불안판판

甲주강에 이자가 있고 실제로 중 배 인거는 불안 판판
필요로 한거

V 설문 (2) 4)

1 권위 범위 확인 심판 확인의 이익 문제

(1) 이해관계인 범위 배제

권위 범위 확인 심판에 이해관계인은 권위 대상 밖에서
대항 받을 수 없기 때문

(2) 확인 대상 발명의 경우 배제

확인 대상 발명의 경우 다른 가치로 현재 실시 중인
것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 예정 중인 것을 대상
삼을 수 없다

2 검토 - 강제실시가능성

강제 실시 가능성 문제는 각권 34 사항으로 판단
가능하고 강제실시이유 확인이 이복은 인정 된다

3 소결 - 甲주강 타당. 강제실시가능성 조사필요

甲주강은 확인이 이유 인정 되고 강제실시가능성 조사해야 함

VI 설문 (3)

2.5

1 甲 발명이 PBP 청구항 여부 (각각)

전체 쪽으로 물건이라만 제2방법 포함 제1 PBP 청구항이냐

2 합쳐서만 판단시 PBP 청구항 해석 방법

(1) 원칙 - 제2방법 포함 방식

PBP 청구항이 해석에 특유성과 가동성 틀이거
없으므로 물건 발명인 이상 제2방법 포함하여 해석한다

(2) 예외 - 제2방법 한정 방식

PBP 청구항 해석에 있어 제2방법으로 한정 해야 하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 해석한다

3 사안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 제2방법 포함

乙의 X'와 甲의 X가 제2방법 포함하여 비교
하여 전혀 명백 특유성 강조한다

(2)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2방법 한정

제2방법으로 한정 해야 하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제2방법 한정 해석 불가

Ⅳ 실문(4)

1 무효 심판 관련 조리

(1) 심결 선고 전



1) 직부 다름 - 法 133조 1항

그의 이해 관계인 인지에 대한 가동은 한다

2) 분안 ① 의결서

부의 특허 발명이 출원사자가 입찰을 이유로 그의 권한에 대하여 대응한다

3) 분안 ② - 권징항위 法 133-2

부의 출원사자를 극복한 방향으로 권징항위를 하는 권으로 대응 해 본다.

(2) 심결 ~~확정~~ 시 선고시1) 심결 취소 소청 法 136조

기각 심결 승의 심결 취소 소청 대응한다.

2) 분안 ① - 새로운 주장 가능

무제한 설에 따라 출원사자가 아니므로 새로운 주장 가능 하다

3) 분안 관련 ③ - 권징 심판 청구 法 136조

法 136조 2항에 따라 심결 취소 소청 계속된 권징 심판 청구 가능 하다

(3) 심결 확정 시1) 인용심결 확정시 - 재심 청구 法 137조

재심 사유가 있는지 심도해서 청구해 본다.

2) 기각심결 확정시 - 권위행사

특허 심판부에 대한 권위로 출원한다

2 합계청 관련 권리

(1) 심결 확정 권

1) 기각 심결 시 - 유예한 증거

무효심판 기각 심결을 특허의 원청에 대한 유예한 증거
 큰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2) 안정 심결 시 - 권리의 대항면

무효심판 안정 심결로 무효 사유 일기만 권리를 통해 극복
 가능 하다고 규정한다

(2) 심결 확정 후

1) 기각 심결 확정 후. - 일사부재의 및 특허효성.

특허 무효심판 기각은 특허 유효하고 2이 무효심판 항의
 일사부재의 규정한다

2) 안정 심결 확정 시 - 항의 시도

특허 특허가 유효함에 따라 2 항제관련 2가 항제
 시도 한다

3 특허에 대한 권리

(1) 특허 실시권 권부 (특권)

특허권자는 특정권 동등실시권은 인정하고. 계약물 통해 유효하다.

(2) 기타권한 실시로 변환 (특권) (소권)

계약과 특허 유효 무렵 관련 따라 변환 권부 없고

(3) 기타권한 실시로 권리 부여 (특권)

계약과 특허 유효 관련 따라 권리까지 부여 한다

문제 -2

12.5

I 설문(1)

55

1 문제점 - 공리예외 규명 제도 : 法302

상사과 편지를 지체 등량한 장 과거 공리 예외는 문제
로 인해 보완 가부가 문제가 된다

2 1기적 9권 총 4부 (각각)

권위라 가 공리 권 날로 부러 1년 이내 출간해야한다
2022.02.10 으르 부러 2022.07:22 은 1년 이내여라

3 의사에 의한 공리 여부 (각각)

甲 이 스스로 2022.02.10에 황하늘을 벌로 하있
으로 14에 의한 공리 이라

4 절하 - 214에 의한 공리 : 法302 1항 1호 (각각)

헌원나 후기 도이 하고 헌원 일로 부러 30일 이내
증명 해야 하는데 사안은 그러기 아나 할로가

5 주장① - 보정기간 내 보정 가부 (각각). : 法302 3항(1) 개정법 - 法302 3항

헌원나 후기 도이를 수정 한 정권 가해후 보정
개정 기간에 공리여지 규정을 할수 있도록 하게한다



(2) 사안의 경우 - 무주상 라상

보상기간에 공기에의 주상하여 결과 보상 가능 하다

6 주상(2) - 분할 출원 용에 보상 가능 (적극)

(1) 중상성 관련 제제

출원 개시상 분할 출원 시 공기에의 주상 보한다고 볼하고.

분할출원 취사상 양간이 개량이 일하여 필요성 인정되고

분할 출원과 공기에의 주상 제도는 별개 제도 이고.

공기에의 주상의 제3기 확장하는 취기가 인정되고

결론 주상 정당에서 주상 안해고 분할출원 시 가능하다

(2) 요건 충족 여부 - 분할 출원 효과로 출원일 용 (적극)

분할 출원시 출원일 소위 리보로 신출원시 요건만 충족

리보로 문제 없다

(3) 사안의 경우 - 무주상 라상

출원일에서 공기에의 주상 하기 안해고 분할 출원

용에 결과 보상 가능 하다.

7 결론 - 무주상 모두 라상

출원시 공기에의 주상 유효하다. 보상기간 유효 분할출원

용에 결과 보상 가능 하다

II 결론 (2) 3-5



1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 취소청구 심리 범위 (법.1963)

(1) 심사 심판 단계에서 출원된 보장 위계제

법.1963은 법.6233 조항으로 거절이유 중의 모든 불복
 이의에 대해 모든 요건을 갖춘 공허 심결 보류와 심판 목적으로
 위한 공허 감행 처분이라고 할 것이기이다.

(2) 심결 취소청구의 출원된 보장 위계제

거절 결정 불복 심결 심결 취소청구의 관습으로 마찬가지로
 출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기이다.

(3) 주된 취지가 부합한 경우 위계제

거절 결정 이유 중 주된 취지가 부합한 경우 주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 위계제 할 것이기이다.

2 주된 취지가 부합하는 리 여부 (소위)

(1) 권보성 판단시 주선행 별명 변경 위계제

권보성 판단시 주선행 별명 변경하는 것은 사33은
 거절이유로 주된 취지가 부합하지 않다

(2) 사안과 정유

선행발명 부에서 근로 바꾸어 취지가 달라졌지

리수 개선리

3 결론 - 실질적 이견 기회로 보며 특이성 주장 (부당)

주선행 별명 변경으로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리수 개선리 주장은 타당하게 양한다.

II 실문(3)

3.5

1 관련 규정(1) 심판 취소 소 청4과 각목 제186조 2항

심판 취소 소청에 청4과를 청4사. 청4가. 청4가
거부된 대로 관청 한자

(2) 출원 취소 소 제 제382조 4항

출원인 출원인 명의 변경에 관해 출원인 명의로

2 관련 판례(1) 특정 출원인 포함 여부 판례

심판 취소 소청을 제기 할 수 있는 권자라고 하여
특정 출원인으로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음

(2) 출원인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 판례

출원인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 특정출원인은
출원 절차에 청4과 등으로 불구 함으로써 출원인 명의로
내지 배제된다고 했음.

3 2의 청4과 각목 (소)(1) 특정 출원인 여부 (적극)

위와 2 간의 계약은 원 하여 2은 특정출원인이다.

(2) 출원인 명의 변경 여부 (소)

2은 출원인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청4과 각목 없다."

18.5

문제 3

I 실문 11

I 1) 임계극점 타당성 (각각)

(1) 이동 임계 위상계

특히 발병에 새로운 것이 부가되어 모이는 경우 포함
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 하거나 열려서 주어진
경우 이용관계로 특히 발병에 함께 이가-

(2) 열려서 위상계

3성이 부가 되어 새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성이 유지 되는 한 이동 관계 부정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부가] C의 연쇄패드 (A + C + M) 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소형 부품 개발 B가 구현 되도록 A + B + C + M 를 실시한다

[일체성] M의 부가로 리 5차의 정공 화가 일어난
B가 동일한 가설 함으로 이동함에 이가

(4) 소절 - 4극점 타당

특은 이동관계로 4 발병 함께 한다

2) 2 임계극점 타당성 (각각)

(1) 직접 임계 여부 (소극) - 생략임계 부정 위상계

특은 생략 임계 를 부정하는 위상계 고해시 구성요를 B로
결여한 실시는 임계가 아니다



(가) 간접 침해 여부 (각각)

1) 간접 침해 의미 취지 : 회개로

침해 수위를 방지 위해 직접침해가 개입성이 높은 경우
회개로 간극하는 리스 이라

2) 방법 또는 물건 불명예 경우 : 회개로 회개로

방법 불명 또는 물건 불명예 생산 사용에만 사용가능한 물건이
생산 사용 등을 행할 행위를 포함한다.

3) AT(+)시 권용률 여부 (각각)

① 공용성 관련 이용 침해 위시제

권용률에 대한 불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은침해
가능성을 고려 할때 여전히 간접 침해 라는 견해이다

② 권용성 관련 ^{타원도} 유효성 위시제

권용률에 대한 불가한 효과가 뛰어나고 하위권도
여전히 권용성에는 문제가 없다 한다

③ 4만개 경우

[공용성] 소비 부가물 판매 권용률이 AT(+)시 이지만

여전히 카드나 방법 불명예 사용에만 사용된다

[권용성] 시부가로 효과가 있지만 유효성도 부정신자 할수없다

결과로 AT(+)시은 카드나 사용방법의 권용률이 다.

4) ~~생산~~의 권용률에 업으로 실시 여부 (각각)

① 생산의 의미 위시제

권용률이 생산이한 간접 침해 수위를 고려 하여 권용

생산 방법 대체 가능관계에 특히 발명에 개연성이 있을
의미 있다

② 김로 - 김랑관계 개연성

생산은 수직적 인 복발이고 필수 김랑관계 개연성이 큰데다

③ 사안의 경우

특히 병립으로 김랑관계 개연성 인정하므로 더 행위를
권리를 범위 포괄 이다

5) 소결 - 무극광 라탄

특히 2 항목 구분 구분 구분 이다

II 실용(2)



1 戊 김해 구분 타당성 (23)

(1) 반계를 구대 (비김해)

반계를 구대는 실제 행위가 아니어서 김해가 아니다

(2) 완계를 생산 (비김해) - 속리구기 권력

완계를 생산은 김해 행위 이라면 제3자에게 이득이
가능 이상 속리구기 권력 김해가 아니다.

(3) 소결 - 무극광 분광

戊는 김해가 아니므로 무극광 분광 이다

2 丁 김해 구분 타당성 (23)

(1) 김랑 김해 여부 (제한적 23)



1) 구성의 완비원형상 침해 여부 (소극)

생략 함에 부응하는 이상 반대를 수반 함에 이치

2) 국내생산 간극 법리상 침해 여부 (제한적 적극)

① 위생제

반대물이 국내 생산되어 수출되고 생산요인이 예성되어 있고
이것이 국제 사보하에 간격하여 효과 대항 가능한 경우
국내생산 간극은 존재

② 사안의 경우.

완제를 생산이 국제 사보하고 효과대항 가능한 중 한가-

(2) 간접 침해 여부 (적극)

1) 구법상 침해 여부 (소극). - 생산의 의미제한 위생제

간접 침해 취지상 동해물만이 권리 범위에 동양사 게
확장하여 있고 위생제사 기능 다용성 국내 생산으로
한정 불가. 간제를 해외 생산 수입으로 부정권

2) 개정법상 침해 여부 (적극). 2025. 01. 22 개정.

개정법상 제조업으로 보아야 수출이 포함 됨으로 인해
본국은 수출을 행하는 취지에 보아 처벌 가능 하

3) 검토 - 침해권도 논외 필요

수출이 침해 면제. 권리범위에 개인성 따라 몇의 개를 본
대수업 여하 따라 침해 권도 달라질수 있음

(3) 소결 - 미국광 라광

미국광 침해가 라광 하가. 각 권리범위에 대해 검토 필요 하



III 설문(3)

1 Y가 권리를 침해 여부 (소극)

Y는 방법 발명의 사용에만 사용되도록 A 생산 능력 남용을
 생략 할 때 부정당 부정당에 관할하거

2 Y 간접 침해 여부 (적극)(1) 간접 침해 여부 취지 (회계)

간접 침해 고지의 개념을 인정하여 침해도 보는 데도 이가

(2) 방법 발명기 경우 (회계)로 고지

방법 발명기 사용에만 사용되도록 불건조 생산 사용
 등은 하는 행위는 존재한다

(3) Y가 권용주는 입찰 시 실시 여부 (적극)

Y는 권용주인 A를 X에게 생산 능력을 하는 권리
 A를 입찰 실시하고 있다

(4) 관련 제도에 - 실시와 권용주 불충족

특허 발명기 특허권 2 법칙은 불충족하여 적당하게
 불충족 범위에서 유로 차별로 실시자에게 권용주도
 남용하는 행위로. 특허권 불충족 실시권 불충족으로
 실시권 불충족 등이 이해 고지행위 행할 수 없다

(5) 제도에 귀속 여부 (소극)1) 라이선스 - 실시 대상

제도에 권용주 실시의 대상은 특허 발명 가에게

대한 불의 영리만 사면의 경우 강박기 실시 이므로
 차이가 크게 한다.

2) 유추가복 (소극)

강박기 실시에는 특히 행명 실시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 실시 행위 등이
 실시된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검토 - 간접침해 개념성

간접침해 리가온 간접 침해 개념성이 있는 경우
 만 인본 되므로 실시된 행위가 아닌 경우 까지
 하등 크다고 볼 수 없다.

(6) 판결 - 간접침해 승인

유는 甲 특허권 간접침해 한다

3 특허 특허 범상 권리

(1) 위사권 권리 (중극)

침해금지 (보126) 손해배상 (보128) 신용회보 (31) 권리가 있다

(2) 형사적 권리 (소극)

1) 권원 위생에

위생법 제8조 개별과 마수법로 규정한 간접침해
 까지 형사적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불균형성에 반한다

2) 사면 기준

유는 간접침해 리서 처벌할 수 없다



12.5

문제-4

I 실문(1)

3

1 선택 별 명 설명

(1) 의미

상위 개념이 공인 되어 있는데 하위 개념은 선택
라는 명칭을 붙인다

(2) 인정 하기 위수제

선택의 관공의 범위 이므로 호외의 현작성 종류
고려하여 기술분류에 조차 지는 입장이자

2 선택 별 명 권보성 인정 요인 (특293 조항)

(1) 원래 위수제 - 호외의 현작성

선택 별 명에 경우 호외가 현리하게만 하면 권보성
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므로

(2) 최근 위수제 - 일반공인 권공의 마찰가기

선택 별 명에 경우 일반공인 권공이 마찰가리로
3권이 공인 되기 호외 확보하여 관조한다

(3) 구체적 인 판단 방법 위수제

선행 문헌에 제시된 하위 개념이 갖는 선택의 경우 양의
구체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4) 검토

일반공인 별 명과 하위권 안을 최근 위수제가 타당하다



I 실문(2)

3.5

1 소실문 1)

(1) 乙 발명이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침해)

乙 발명은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반면 사실상 甲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침해 이다

(2) 乙 발명에 효과가 현저한 경우 (비침해) - 변기 명실

선래 발명의 동치성으로 인정하고 위임으로 효과가 현저한 경우 '비침해에 해당한다.'

2 소실문 2)

(1) 甲이 $A+B+C_1$ 을 실시하는 경우 (비침해) 균등판단 필요

법 91조 상 $A+B+C_1$ 은 $A+B+C_2$ 가 아니므로 균등하지 않은 이상 침해 아니다.

(2) 甲이 $A+B+C_2$ 를 실시하는 경우 (침해)

법 91조 상 $A+B+C_2$ 는 乙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선래에 귀속하여 균등판단 가능 아니다

3 소실문 3) - 비침해

선래 발명의 권리 동일과 관련한 권리 서로

비침해로 보고 있다. 법적 안정성 위해

입항이 필요해 보인다

II 실문(3)

1 조치 ① - 문언침해 부정

구성의 단어 위칭상 $A+B+C$ 와 $A+B$ M은 3개의
 상이 하나로 문언 침해 선립 말한다. 국문상

2 조치 ② - 관용침해 부정

(1) 관용을 기재하기

특히 불명시 치위 선계를 역시 기재 3개의 관용
 한점수 권개로 보는 배제로 인정할 제문이고

(2) 표진

(1) 과제해결 권리 동일성, (2) 위문로에 포함조항 (3) 기
 변경 위성 A 자수기은 항변 B 비수라 제적이 있다

~~3 권문 관련 조치 ① 과제해결 권리 동일 (부정)~~

(1) 과제 해결 권리 동일성 판단 방법

1) 과제 해결 권리 실질적 기재 방식에

특히 불명시 과제 해결 권리를 실질적으로 기재 하기
 리해시 불명시 정자를 작성하기 기술 사항 특점
 항상시 부모의 관조해야 한다

2) 과제 해결 권리 즉 결정 방식에

권리 기질 등을 작성 하기 과제 해결 권리를 권리
 넘은 리 클은 리 판단 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 ① 甲의 심혈관 리듬을 조절 등의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② 乙 별명을 가진 공인 별명을 사용하여 주는 것 또한
- ③ 甲 별명과 丙 社 B 시의 반응기각이 가름 증명한다

4 권리를 관련 권리 ② 각종호라 실용성 등일 (부경)

(1) 각종호라 등일성 판단 방법

1) 취급

과거 해결 권리가 존재할지 여부
후과 차이를 본다

기 예시

과거 해결 권리의 기술적 사항 행상이 권리권 범주
개별 적호라 차이를 본다

(2) 사안의 경우

- ① 수익권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화가 잘라 과거 해결 권리가
가 있음을 주장한다. ② 예비적으로 권리가 있을 때
귀속사실 권리 증명하여 개별호라 차이 증명한다

5 권리를 관련 권리 ③ 기타 관련 (부경)

- ① 구상 변경이 예시 시으로 바꾸는 게 용이하게 받고
- ② 이미 공인 기술을 가지는 것을 증명한다. ③ 구상권 평가
예시 시이 위상권 제기 되었다고 주장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Good!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1]

I. 실문 (1)

1.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의의 및 취지 - 법제 135조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자 특허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2. 침해소송과의 차이점

침해소송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보호범위 침해 여부
 가 확정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보호범위를 대세
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II. 실문 (2) - 1)

1.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리 범위 - 원칙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사이
의 관계에서 그 특허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
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인적 효력 제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경우 - 부당

甲의 특허권이 발명 X'에 관련된 물건과의 관계에서
소권되었다는 주장은 대인적 효력 제한 사유의 주장에

불러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부담하다.

IV. 실문 (2)-2)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거부 - 취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 하야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무효심판
제도와 별도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기능을 남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우 - 부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기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바, 그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부담하다.

IV 실문 (2)-3)

1. 균등한 발명을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적법 여부

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제해결능력이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으로부터 균등한 경우에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 한다.

2. 사안의 경우 - 타당

Z이 구체적인 부분을 변경하였다도 그 발명 X'가
특허발명 X와 균등한 범위 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甲의 정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V. 명문 (2)-4)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적격 - 判例

제 135조 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를 실~~
~~시할 예정인 자도 포함된다.~~

2. 사안의 경우 - 타당

~~法 제 135조 2항에서 이해관계인의 소극적 권리범~~
~~위 확인심판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Z은~~
~~확인대상 발명을 장래 실시할 예정인 자로서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타당하다.~~

VI. 설문(3)

2.5

1. 甲의 발명 유형 확정 - PBP 청구항 발명

~~甲의 발명은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통해 특정되는 물건 발명으로, 이러한 청구항은 PBP 청구항에 해당한다.~~

2. 甲 발명 확정 방법 - 判例

PBP 청구항에서 그 발명의 대상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이므로, 발명은 물건발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발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제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청구항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수준을 가진 물건이다.

3. 사안의 경우

甲의 발명은 물건발명이지만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Z의 발명 X'의 실시가 甲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건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甲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VII. 설문(4)

4.5

1. 무효심판의 의의 및 취지 - 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인은 특허에 무효사유 존재함을 이유로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실 특허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된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 조치 1 - 법원에 증거 제출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되어 甲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침해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작용하여 甲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乙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2) 조치 2 - 손해배상청구

甲은 乙의 실사가 甲 특허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제 12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조치 3 - 침해죄 고소

乙이 청구한 무효심판이 기각되면 그 이듬해에 乙이 실사를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인정하므로, 甲은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 가능하다.

3. 특허무효심판이 인용된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 쟁쟁의 재항변 - 判例

(1) 예는 침해소송 피고가 원인의 특허권 무효심판의
 인용심결을 항변으로 주장한 시인이며, 원고가 정정
 을 통해 특허무효의 하자를 치유하였거나 할 수 있
 다고 재항변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정정을 통해 하자 극복이 가능한 것을 이유로
 정정의 재항변을 하고, 정정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기타 권리

통상실시권 설정, 화해, 조정 등이 가능하다.

[결]

[문제-2]

2. 선문(1)

1. 금지예외주장제도의 의미

- 법제 30조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
 개된 경우 소제 요건 하에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
 할 때 그 발명이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보정을 통한 거절이유 극복 여부 - 불가

(1) 금지예외주장의 요건



1) 원칙

공시예외주장을 하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외

보장서류를 납부한 경우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공시예외 주장의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가능하다는 것이지, 발명의 보장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보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3. 분할출원을 통한 극복 가능 - 가능

(1) 근거

공시예외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면 되므로, 새로운 출원인 분할출원시 그 분할출원일이 2022. 2. 10. 즉 발명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출원의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할 수 있다.

(2) 증명서류 제출 - ~~특 제 52조 2항 2호~~

위와 같이 분할출원하면서 금지예외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 소금호의 예외로 法 제 52조 2항 2호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4. 결론

甲은 보증을 통한 극복은 불가능하나, 공개된 발명을
분할출원하면서 금지예외 주장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II. 심문 (2) 3-5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 法 제 186조

특허에 관한 부당한 심결을 취소하기 위해 특허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판례

(1) 원칙 - 무제한심

원칙적으로 특허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
는 심판에서 심리되지 아니한 심결의 위법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 가능하며, 심결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 이를 제한없이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최소소송의 경우 - 제1항

심판·심리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심결최소소송에서 그 심결의 판단을 정당한 것은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지식재산제장은 이러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는 심결최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이 불가능하다.

3. 사안의 경우 - 부당

비록 거절결정 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진보성을 이유로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선행발명이 변경된 것은 수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지식재산제의 주장은 부당하다.

Ⅲ. 질문 (3) 3

1. 심결최소소송 청구인 적격 - 법 제182조 2항

심결최소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제기 가능하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法 제 38조 4항

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일반승계 등을 제외하곤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2의 권리 승계 여부 (소극)

2은 권리를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甲의 출원 이후의 양수인이므로 출원인 변경신고를 해야 그 양수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2은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바 권리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2의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 (소극)

라나서 2은 甲의 출원과 아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바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 못미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부적합하다. [끝]

[문제-3]

I. 실용 (1)

1. ~~쟁쟁쟁리~~

침해의 다른 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나, 2과 丙의 실시가 甲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 실시인지 승계되므로,

이하 甲의 특허권의 보호범위 판단하여 침해여부
판단한다.

2. Z의 특허권 침해 여부 검토

(1) 직접침해 여부

1) 문언침해 여부 (소극)

Z이 실시중인 발명 $A+C+M$ 은 甲의 발명 $A+B+C$
와 구성요소를 달리하므로, 문언침해는 생략 가능하다.

2) 균등침해 여부 (여지)

Z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M이 甲 특허의 B와 균등
한 구성요소라면 균등침해가 생략 가능하다.

(2) 간접침해 여부

1) 타용도: 복용개시

Z의 $A+C+M$ 에 다른 용도가 있어 Z이 자신의
발명인 연가용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甲의 특허발
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甲의 특허물건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되어 간접침해 생략 가능하다.

2) 더 우수한 작용효과가 있는 경우 - 判例

이러한 간접침해는 甲의 발명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더 나은 작용효과를 나타낼 예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丙의 침해 여부 검토

(1) 丙의 실시발명 해석

丙이 A+C+M을 사용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甲의 특허발명 구성요소 중 소형유동채널(B)와 동일
한 구조와 기능을 하는 클러니 홈이 형성되는 바,
丙의 실시 발명은 A+B+C+M 이 된다.

(2) 직접침해 여부 - 적극

丙은 A+B+C를 직접 이용하여 A+B+C+M을 실시
하고 있는 바, 이는 甲 특허권의 이용침해에 해당
한다.

4. 결론

甲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다.

Ⅱ. 문제(2)1.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실시행위별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2.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判例

국내에서 완제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그 조립
이 예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조립의 과정이 극히
사소하고 간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완제품

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丁의 생산행위 ^{권장} 침해 해당 여부 (제한적 적극)

丁이 생산하는 반제품이 구성요소 대부분을 갖출고 있어 丙의 완제품 생산과정이 극히 사소한 경우, 丁이 생산한 반제품을 완제품의 생산으로 보아 직접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4. 丁의 수출행위 - 간접침해 가능

(1) 수출행위 개정법 도입

제 127조 1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포함시켰다.

(2) 시안의 경우

丁의 반제품이 甲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경우, 그 수출은 법문의 규정이 따라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5. 戊의 생산행위의 甲 특허권 침해 여부 (소극)

戊의 완제품 생산행위는 제 33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숙지극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 특허법에 따르면 戊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실용 (3) 2.5

1. 동상실시권의 의미 - 법 제 102조

동상실시권자는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영으로써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2. 동상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판례

특허권자는 동상실시권을 설정할 때 동상실시권자가 전용품을 공급받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품 공급자가 전용품을 생산하여 오로지 동상실시권자에게만 공급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동상실시권자의 실시의 일부로 볼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동상실시권자 X는 甲과 동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전용품의 계약 및 공급을 Y에게 의뢰하여 납품받고 있고, Y는 X의 요청에 따라 X에게만 납품하고 있다, 이는 X의 특허발명의 실시권 내의 정당한 실시이다.

4. 결론

甲은 Y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답]

6.5

[문제-4]

I. 선명 (1) 3

1. 선택발명의 의미

상위개념으로부터 선택된 하위개념들로 구성된 발명이다.

2. 진보성의 의미 - 法 제 29조 2항

선행 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3. 선택발명 진보성 인정 요건

(1) 종래 例例

기존 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것을 요구했다.

(2) 최근 例例

구성의 본질성을 고려하며, 반드시 효과가 현저하지 않아도 개선된 효과가 있으면 중합성도? 고려하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사안의 경우

Z의 발명은 $A+B+C2$ 이고, Y의 진보성을 인정 받으려면 동상의 기술자가 C2를 임의선택할 개선성이 낮아야 한다. 즉, 구성의 본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II. 실문(2)

2

1. 甲의 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 - 침해

(1) 乙 발명이 甲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C2는 C의 상위개념으로, C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

(2) 乙 침해의 유형 - 물연 침해乙이 A+B+C2를 실시하면 A+B+C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접 침해를 해당한다.2. 乙의 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 - 침해 여부甲의 발명의 C가 乙의 상위개념으로 C2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甲의 출원 실시는 3개 요소를 준비하지 않아 乙의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3. 甲과 乙의 출원이 동일자 출원인 경우동일자 출원인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III. 실문(3)

1.5

1. 균등권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범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므로, 判例로써 확립된 법리이다.

2. 兩이 취할 수 있는 권리

1. 구성변경이 용이하거 양쪽을 주장할 수 있다.

- 이하어백 -

과잉!

